

##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「도로법」 제73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「도로법」 제100조제2항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22일

부산지방국토관리청



공고기간	2024. 2. 23. ~ 2024. 3. 8. (15일 간)
공고사유	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법적근거	「도로법」 제100조제2항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1항 및 제14조제4항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「도로법」 제10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금500,000원 ※ 수납기관 및 납부기한은 추후 고지서 발급 시 통보
공시송달 대상자	임*군(경북 영덕군 남정면 동해대로 3747-41)
의견제출기한	2024. 2. 23. ~ 2024. 3. 22.
문의처	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(경북 포항시 흥해읍 용전길 141, ☎054-260-2536)

※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,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